

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025호
- 나.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2. 제안이유

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,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며,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,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정책 공로자에게 표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- 나. 항일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

의3 신설)

다. 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4 신설)

라.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2 신설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시장이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·보존을 위하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, ‘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’을 구성해 역사적 가치 판정 등 관련한 자문을 받도록 하며, 항일독립운동유적 소유자의 관리책임, 유적보호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 현황

- 서울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설치사업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제로 서적 발간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현장과 사건을 소개하고 독립운동가 인물 등을 조명해오고 있음(참고자료1).
- “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설치사업”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사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

쳐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표석은 63건임.

- 「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」 제정 (2020. 7.) 이후 기존 표석 설치사업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.

다.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의 확대(안 제5조 4호·5호 신설)

- 안 제5조는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(안 제5조제4호)과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·지원을 신설(안 제5조제5호)하는 사항임.
-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」 2가지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.
- 전자의 ‘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’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¹⁾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계승을 목적

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
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6조(공훈선양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·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·조형물·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.

으로 기념사업이나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·전시관·조형물의 건립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 지원(안 제5조제5호 신설) 규정은 ‘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’에 반영해 일원화시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.

라. 자문단 구성(안 제5조의2 신설)

- 안 제5조의2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.
- 하지만 제4조제3항 계획 수립 등 현행조례에 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’는 조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.

<수정의견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<p>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</u> 1.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.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
<p><신설></p>	<p>제5조의2(자문단 구성)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<u>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)을 구성할 수 있다.</u>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 향토 사학자,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역사사료,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·분석 2.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.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4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</p>	<p>제5조의2(자문단 구성)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<u>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)을 구성할 수 있다.</u>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 향토 사학자,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.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. 역사사료,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렴·분석 5.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.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</p>

		<u>적 지도 제작 등</u> <u>7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</u> <u>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	<u>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u> <u>⑤ 제4항의 자문단(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</u>	<u>④ (개정안과 같음)</u> <u>⑤ (개정안과 같음)</u>

마. 유적 보호 및 관리(안 제5조의3, 안 제5조의4 신설)

- 안 제5조의3은 항일 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사항임.
-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는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소유자 관리의 원칙으로 관리·보호 등 근거법령이 명확하나, 현재 항일독립운동 유적 중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국가지정문화재(18건)와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서울시지정문화재(6건)는 많지 않은 실정임(참고자료 2).
- 본 조항은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상위 법령 근거가 필요한 바, 비 지정문화재가 대부분인 항일독립운동

유적에 관하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적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에 관리·보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.

<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신설>	제5조의3(관리의 원칙)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·보호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<u>소유자·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·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</u>	제5조의3(관리의 원칙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<u>소유자·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·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</u>

- 또, 안 제5조의4는 ‘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 설치,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 자문단에 보호조치 판단여부에 대한 강제권한을 부여하면 심의·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
<수정의견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제5조의4(유적 보호 및 관리)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<u>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	제5조의4(유적 보호 및 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<u>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</u>

라. 종합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·보존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‘항일운동 자문단’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항일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다만,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·지원은 공훈선양 사업 및 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.
-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소유자의 관리의무나 별도의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

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적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유적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.

-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, 건축물 등은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‘서울시 문화재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지정(등록)안내판을 설치하여 보존·관리하고 있음.
-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에 보존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강제권한을 갖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
담당 조사관	노재윤 02-2180-8118
전문위원	강 현 02-2180-8114

[참고자료 1 :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제로 서적 발간 및 기획전시기획]

<서울역사편찬원 자료 발행 현황>

연번	자료명	내 용	비 고 (발행일)
1	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	대한제국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소재지와 관련 사건 소개	2008.8.31
2	서울역사총서 제7권 <서울항일독립운동사>	한말 일제의 침략과 국권수호운동으 로부터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전 개와 의열투쟁의 양상을 시기별 로 다루고, 교육·경제·사회·문화 예술·종교 분야의 독립운동이 담겨 있음	2009.2.28
3	1919년 3월1일 그날을 걷다	3·1운동 100주년 기념 서울역 사답사기	2019.12.20

<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현황>

연번	전시명	내 용	비 고 (전시기간)
1	열도 속의 아리랑	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시작된 재일동포들의 도항, 생활자료, 민족교 육, 차별에 대한 저항, 사회각계의 활 약상 등을 전시	2012.8.10. ~10.7
2	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- 민국의 길, 자유의 길	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의 독립운 동가인 우당 이회영 6형제의 독립운동 을 조명하는 전시	2017.8.4. ~10.15
3	서울과 평양의 3·1운동	3·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과 평양의 3·1운동 소개	2019.3.1. ~6.9

[참고자료 2 : 항일독립운동 관련 서울시 및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]

<서울시 지정문화재 현황>

연번	문화재 종류	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
1	유형문화재	1호	장충단비	중구 장충동2가 197
2	유형문화재	2호	봉황각	강북구 우이동 254
3	유형문화재	36호	천도교 중앙대교당	종로구 경운동 88
4	유형문화재	73호	탑골공원 팔각정	종로구 종로2가 38-1
5	유형문화재	130호	승동교회	종로구 인사동 137
6	기념물	10호	보신각 터	종로구 관철동 13-21

<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현황>

연번	문화재 종류	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
1	사적	32호	서울 독립문	서대문구 현저동 941 등
2	사적	256호	서울 정동교회	중구 정동 34-3
3	사적	324호	서울 구 서대문형무소	서대문구 현저동 101
4	사적	330호	서울 효창공원	용산구 효창동 255,256 등
5	사적	354호	서울 탑골공원	종로구 종로2가 38-1 등
6	사적	465호	서울 경교장	종로구 평동 108-1
7	사적	550호	만해 한용운 심우장	성북구 성북동 222-1 외 등
8	등록문화재	514호	서울 이준 묘소	강북구 수유동 산127-1
9	등록문화재	515호	서울 손병희 묘소	강북구 우이동 산28-1
10	등록문화재	516호	서울 이시영 묘소	강북구 수유동 산127-1
11	등록문화재	517호	서울 안창호 묘소	강남구 신사동 649-9
12	등록문화재	518호	서울 김창숙 묘소	강북구 수유동 산127-4
13	등록문화재	520호	서울 신익희 묘소	강북구 수유동 산127-1,산74-3
14	등록문화재	530호	서울 여운형 묘소	강북구 우이동 106-1
15	등록문화재	687호	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(달쿠사)	종로구 사직로2길 17
16	등록문화재	691-5호	망우 독립유공자-서광조 묘소	중랑구 면목동 산1-2 선천암
17	등록문화재	691-6호	망우 독립유공자-서동일 묘소	중랑구 망우동 산57-3
18	등록문화재	691-7호	망우 독립유공자-오재영 묘소	중랑구 망우동 산57-3